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4. 11. 26(화) 10:00

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자원 조례안

(문화환경국 환경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48호
- 나. 제 출 자 : 고영찬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1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2.

2. 제안이유

공공기관에서 종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문제가 상당함에 따라 종이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구청장, 공공기관의 장, 구민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실태조사(안 제4조 및 제5조)
- 라. 공공기관 협조 및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(안 제6조 및 제7조)
- 마. 교육 및 홍보,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및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 - 1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조
 - 2.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입법예고 : 2024. 11. 15.~2024. 11. 21.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발의됨.

나. 주요 내용

1)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- 종이사용 줄이기의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함
금천구청, 구의회, 산하기관, 공단, 출자출연기관

2)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구청장, 공공기관의 장, 구민의 책무(안 제3조)

- 금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위해 금천구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책무를 명시함

3)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실태조사(안 제4조 및 제5조)

4) 공공기관 협조 및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(안 제6조 및 제7조)

5) 교육 및 홍보,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및 제9조)

다. 검토의견

-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종이 사용을 줄이는 사회적 실천 운동이 국민적 공감을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.
- 종이없는 회의 활성화, 생활 속 종이낭비 줄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금천구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종이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명확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 8. 8., 2024. 1. 9.>

1. ~ 3. (생략)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
가. 지역개발사업

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
다. 도시·군계획사업의 시행

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도(市道)·군도(郡道)·구도(區道)의 신설·개선·보수 및 유지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바.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
사. 자연보호활동

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
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
차.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카. 도립공원, 광역시립공원, 군립공원,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

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파.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하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
거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너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
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5. ~ 7. (생략)